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1. 7 선고 2020가단10453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피 고 1.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인, 담당변호사 이주호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현암, 담당변호사 이지승

변론 종결 2020. 11. 26.

판결 선고 2021. 1. 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1,269,837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 사이에 2017. 11. 27. 체결된 매매계약을 22,047,1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 C은 원고에게 22,047,1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D이 2016. 4. 14. 피고 B에게 7,000,000원을 대출이자 연 27.6%, 지연이자 연 27.9%, 대출만료일 2019. 4. 14.로 각 정하여 대출해준 사실(이하 '이 사건 대출채권'이라 한다), 이후 피고 B이 대출금 상환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D이 2017. 4. 14. 이 사건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가 2017. 4. 26. 주식회사 D을 대리하여 피고 B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한 사실, 2020. 1. 9.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채권의 잔액이 11,269,837원(= 원금 7,000,000원 + 이자 4,269,837원)인 사실을 각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양수금 11,269,837원 및 그 중 7,000,000원에 대하여 2020.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0. 1. 10. 기준으로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채권을 포함한 22,047,149원의 대출채권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2017. 11. 27. 55,687,266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로 채무초과인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C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었다. 따라서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2017. 11. 27.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22,047,14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22,047,14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는 2017. 11. 27.에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B의 유일한 재산이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도한 것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부동산 외에 포항시 남구 E 답 399평 중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B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훈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동[도로명주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아파트

1층 내지 5층 각 552.6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 2851㎡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3.34㎡

(대지권의 표시)

1 소유권대지권 285100분의 3777 끝.